

스웨덴 장애인 돌봄 정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The Care of Disabled People in Sweden: the Case of Personal Assistance

요한나 구스타프손(스웨덴 외레브로대학 보건과학대학원 스웨덴 장애인연구소)

스웨덴은 1994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중증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혁이 단행된 이후 20년간 스웨덴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 수와 활동지원 수급 시간이 크게 증가했으며, 활동지원 총비용도 120억 크로나(약 1463억 원¹⁾)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2015년을 기점으로 둔화하기 시작해 2년간 총수급자 수가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 스웨덴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특히 제도 운용 비용에 대한 논쟁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1. 들어가며²⁾

스웨덴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PA: Personal Assistance)는 영구적, 반영구적 중증 장애로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스웨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기본 취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이 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 권리를 규정한 스웨덴 장애인지원·서비스법(The 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s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Disabilities, 이하 'LSS')이다.

* 번역: 라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위원

1) 1크로나를 121.95원으로 환산하였다.

2) 여기에 소개된 내용은 스웨덴 사회보험청에서 발행한 2017년 사회보험보고서를 참조하였다[Social Insurance Agency. (2017). Social Insurance Report 2017, p. 4.].

1994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스웨덴에 도입된 이래 활동지원급여(assistance allowance)의 수급자 수와 수급 시간이 크게 증가해, 최근에는 2만여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다. 이 중 1만 6000여 명 정도는 스웨덴 사회보험청(SIA: Social Insurance Agency)에서, 나머지는 지방정부(municipalities)에서 활동지원급여를 받는다. 1994년에 30억 크로나(약 3661억 원)에 불과하던 연간 활동지원 예산은 2016년 260억 크로나(약 3조 1733억 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가 사회보험청(SIA)에 활동지원 비용의 증가 억제를 요구한 뒤로부터 2년간 수급자 수는 약 1200명 줄어들었다.

활동지원 비용이 증가하자 스웨덴의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수급자들 모두 이를 우려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었다. 정부는 활동지원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반면, 수급자와 그 가족, 활동지원 이용자 운동 연합의 대표들 등은 개인에게 돌아갈 활동지원급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오늘날 스웨덴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으나 적절한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

2. 장애인 정책 개혁

스웨덴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에게 생활조건의 평등과 사회참여를 보장한다는 원칙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기반을 둔다(The Swedish government, 2016). 이러한 원칙은 스웨덴의 장애 아동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성장하고, 가족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같은 사회적 지원을 받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성인에게는 특수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소나, 활동지원 서비스의 형태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는 숙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를 살펴본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장애인들의 생활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열악한 생활 여건에 처해 있으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도 아직은 부족하다(The Swedish Agency for Participation, 2016). 또한 여성 장애인의 생활 여건이 남성 장애인보다 나쁘다. 장애인 남녀 간 생활 여건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1994년에 단행된 장애인 정책 개혁으로 중증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의 관련 제도에서 장애인은 사회의 돌봄 대상일 뿐이었고 돌봄을 설계하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개혁을 통

해 장애인 정책에 관한 관점과 권한 관계가 180도 바뀌어서 이제 장애인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장애인 돌봄을 설계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 법이 바로 스웨덴 LSS³⁾ (장애인지원·서비스법, 1993: 387)이다.

LSS는 열 가지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의 법적 수급권을 장애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이 개선된 생활 여건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에게 보장된 열 가지 지원 및 서비스는 (1) 자문 및 전문 지원 - 장애의 의료·심리·사회·교육 양상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지원, (2) 활동보조(personal assistance) - 착·탈의, 개인위생, 식사, 의사소통 등 지원, (3) 동반자 서비스 - 레저·문화·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외출 등 지원, (4)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지원(contact person) - 친구와 같은 개인적 도움과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 (5)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 (6) 단기 야외 체류 활동 지원(short-term stays away from home), (7) 12세 이상 재학 아동 학기 외 시간 단기 돌봄 서비스(Short-term care for school children over 12), (8) 아동·청소년을 위한 위탁가정(foster home) 및 특별주택(special housing) 지원, (9) 성인을 대상으로 특수 서비스나 장치가 제공되는 주택, 그룹홈 등 지원(Housing with special services for adults or other especially adapted housing for adults), (10) 장애인 일상활동[예: 장애인보호작업장 혹은 주간활동센터(day center)] 지원이다.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활동지원급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취지는 1980년대에 스웨덴으로 유입된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에서 비롯되었다(Westerberg, 2016). 이 이념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지원의 제공 주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외부의 간섭 없이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고용함으로써 자신이 받을 활동지원에 최대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고자 지급되는 급여이다.

그런데 1994년 장애인 정책 개혁의 단행 이래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지원 수급자가 활동지원을 선택하는 양상에 비교적 큰 변화들이 일어났다. 장애인 정책 개혁의 원 취지는 장애인 수급자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스스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가령, 수급자가 활동보

3) LSS는 1994년 개혁으로 도입된 장애인지원·서비스법의 스웨덴어 약어이다.

조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지방정부(municipality)를 통해 고용하거나, 다른 수급자들과 이용자협동조합(user cooperatives)을 조직해 고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활동지원기관들의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SIA, 2017). 2016년 12월 기준으로 스웨덴에는 민간·공공활동지원기관이 모두 1044곳에 달한다. 더욱이 수급자 500여 명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일종의 자가활동지원자인 셈이다).

가.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

LSS가 규정한 활동지원급여는 착·탈의, 식사, 개인위생, 의사소통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특정 장애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속해야 받을 수 있다. 첫째, 지적 장애(intellectual impairments)나 자폐증이 있는 자, 둘째, 성인으로서 뇌에 부상을 입어 지적 능력에 장애가 있는 자, 셋째, 신체·정신기능의 영구적 중증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그에 따른 상당한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한 자이다. 수급 자격에 최저 연령 제한은 없으나 65세 이상(은퇴 연령)은 수급 신청에 제한을 받는다. 다만, 65세 전에 인정된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은 65세가 된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다.

스웨덴 사회보험청(SIA)에서 지급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주당 20시간 이상의 활동 지원이 필요한 상태여야 한다. 수급 자격을 심의한 결과, 주당 20시간 이상의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인 사회보험청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자격도 얻는다. 다른 서비스에는 여가활동, 직업훈련, 친구·친척 등과의 사교활동, 업무 수행, 부모로서의 책임 수행, 가사, 사회활동 참여 등과 관련된 활동지원이 포함된다. 수급 자격 심의 결과에서, 신청자의 욕구가 충족되는 데 20시간 미만의 지원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 수급 신청자는 지방정부(municipality)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다.

나. 활동지원 재정

스웨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진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서 각각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전체 수급자의 약 5분의 1이 지방정부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해

왔다(SIA, 2017). 활동지원급여액은 매년 시간당 정액으로 산정된다. 수급자가 정액급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으려면 그만큼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가령, 필요한 활동지원이 저녁, 주말 등에 몰려 있다든지, 활동보조인이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올해 활동지원급여율은 시간당 295.4크로나(약 3만 6000원)이다. 이 급여는 활동지원이 이용자협동조합을 통해 이뤄지든, 민간기관이나 지방정부를 통해 이뤄지든 상관없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정부활동지원기관들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민간활동지원기관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현 수준의 정액급여로는 활동지원서비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방정부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정액급여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보다 대략 10~1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ALAR, 2015).

다. 활동지원 비용

지난 10년간 활동지원 비용은 120억 크로나로 불어났다. 사용자 1인당 평균 65만 크로나가 증가한 셈이다(SIA, 2017). 활동지원 비용의 증감은 수급자 수, 활동지원 평균 시간, 시간당 활동급여율, 이 세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2009년 이래 수급자 수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비용 증가의 주된 요인은 활동지원 평균 시간의 증가로 볼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가 도입될 당시 활동지원 시간은 매주 평균 67시간이었으나 이 시간은 계속 증가해 2016년 기준 매주 평균 127시간으로 늘어났다(SIA, 2016a, 2016b).

라. 활동지원인력

2017년까지 9만 3000명 이상이 활동보조인으로 종사했다. 이 직업군은 스웨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직업군 중 하나가 되었으며 대부분 여성이 참여하고 있다(Westerberg, 2016).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들이 하는 일의 성격이나 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활동보조인의 20%는 가까운 친척이다(SIA, 2018).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아동과 청소년은 대부분이 적어도 한 명의 가까운 친척을 활동보조인으로 두고 있으며, 46세 이상 성인층에서는 두 명 중 한 명이 가까운 친척을 활동보조인으로 두고 있다(SIA, 2017). 결국 가까운

친척이 모든 지원의 4분의 1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직업과는 달리 활동보조인은 전반적으로 주당 근로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SIA, 2017). 특히 친척이 아닌 활동보조인들의 근로 시간이 적다. 반면에 가까운 친척이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 시간이 더 많은 편이다. 친척을 활동보조인으로 둔 장애인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친척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의 역할이 다소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친척에 의한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기도,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Dunér & Olin, 2018). 인터뷰에 응한 장애인들은 자신들과 친척 활동보조인 간의 복잡한 관계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자립, 의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간의 상호의존 등 다양한 경험을 묘사했다.

마.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1994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는 6100명이었으며 이들의 활동지원 평균 시간은 대략 주당 67시간이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수는 1만 4886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의 활동지원 평균 시간은 주당 128.5시간으로 늘어났다. 여성 수급자(6840명)보다는 남성 수급자(8046명)가 많았고 시간상으로도 남성(주당 130.5시간)이 여성(주당 126.2시간)보다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에서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수는 2009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후로는 약 1만 6000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SIA, 2017).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이유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2001년 법률 개정으로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65세 이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초기 LSS안(案)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활동지원 욕구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있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과소평가한 탓이기도 하고 자폐 진단을 받은 아동의 수를 과소평가한 탓이기도 하다. 셋째, 1996년 법에 의해 도입된 다섯 번째 기본 욕구(the fifth basic need)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는 1200명이 줄어들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신규 수급자가 가장 많았다가 그 후 수급 지원자 수는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신규 수급자의 수는 감소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새로운 판

4) 수급자가 요구하는 지원에 대해 전문적 지식 - 수급자가 지닌 장애에 대한 정확한 지식 등 - 이 요구되는 성격의 지원을 일컫는다.

결(jurisprudence)과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기본 욕구에 할당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최고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에서 내린 두 가지 판결로 전문적인(thorough) 지식을 갖춘 대상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스웨덴 사회보험청은 2015년과 2016년에 이 판결에 근거해 활동지원 수급 자격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청의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주당 20시간 이상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다 중도에 그만 받게 되는 수급자는 별로 없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들의 장애는 대부분 영구적,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급여는 오랜 기간 지속된다. 2015년 기준 수급자의 절반 정도는 급여를 받은 지가 적어도 10년이 넘는 사람들이었다(SIA, 2017).

바. 활동지원 시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주어진 활동지원 평균 시간은 계속 증가해 왔다. 이는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주어진 활동지원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다(SIA, 2017).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하는 자들 중 절반 정도는 수급 자격을 취득한 지 2년 내에 더 많은 활동지원 시간을 신청한다. 이렇게 추가 시간을 신청하는 사람 열 명 중 아홉 명은 평균 주당 32시간의 추가 시간을 얻게 된다. 여러 보고서들에 따르면, 수급자들이 추가 활동지원 시간을 요청하는 주된 원인은 경제적 여건이다(ISF, 2012; SOU, 2012, p. 6; SIA, 2016c).

민간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방정부를 활동지원기관으로 선정한 사람들에 비해 연간 활동지원 시간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SIA, 2015). 지방정부활동지원기관에서 민간활동지원기관으로 옮기기만 해도 한 시간이 증가한다. 그러나 지방정부활동지원기관을 선정한 수급자들의 활동지원 시간도 증가하는데, 이는 사회보장청이 활동지원급여를 많이 제공할수록 지방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장애복지서비스가 줄어들므로 지방정부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SIA, 2017). 이런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비용 일부가 중앙정부로 이전될 수 있다.

활동지원기관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용자별 활동지원 시간의 증가를 설명할 수는 없다. 게다가 활동지원 시간을 결정하는 곳은 활동지원기관이 아니라 사회보험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SOU, 2014, p. 9). 다른 보고서들에서는, 활동지원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이에 관한 법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ISF, 2015; SOU, 2012, p. 6). 이는 사회보험청이 이 법을 적용하는 양상에서 잘 나타난다. 법에는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스웨덴 사회보험청 직원들도 다양한 욕구들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SIA, 2015). 또한 이들은 수급 자격 기준이 수정되지 않아도 법정 판결이 달라지면 이것이 수급 자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활동지원 시간이 증가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은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들에게, 전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사실상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표이기도 하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90% 이상은 친구와 친척을 만날 때, 시내에 나갈 때, 쇼핑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할 때 활동지원을 이용한다(SIA, 2015). 활동지원급여 재사정을 통해 추가 활동 시간을 받게 되는 장애인들의 약 18%는 기존에 지원받던 종류와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을 추가로 받는다(ISF, 2014).

4. 나가며

스웨덴에서는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그 비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6년에 정부가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활동지원 시간의 증가와 과잉 이용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 이래 논쟁은 더욱 가열되었다(Ministry of Social Affairs, 2015).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비용은 그동안 증가해 왔지만 이러한 비용 증가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초래된 실제 비용의 증가인지, 아니면 사실상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인지 분간하기는 쉽지 않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비용 중 절반 이상은 활동보조인력의 인건비이며, 이 인건비의 일부는 세금의 형태로 다시 중앙정부로 돌아간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다른 지원제도와 서비스에 소요될 비용의 일부를 재분배한다(SOU, 2008, p. 77). 스웨덴 사회보험심사평가원(Swedish Social Insurance Inspectorate)은 지방정부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들의 수급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다. 수급 개시 직전 연도에 수급자의 60%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수급 개시 다음 연도에는 이러한 수급자 비율이 30%로 떨어졌다. 일상생활 지원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지원들이 줄어든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

원제도를 통해 시설이나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목적주택에서 벗어나 평범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스웨덴에서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생활수준과 비장애인들의 생활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SOU, 2008, p. 7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사회보험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들은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주도권을 쥐면서 더 안정적인 생활에 안심하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장애인 수급자나 그 친척들의 복지가 향상되었다(SIA, 201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또 다른 목적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들에게 이 제도가 그들이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자명하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도 의미가 크다(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8). 이 제도로 인해 부모 모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그들이 수행한 돌봄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아동을 둔 부모의 임금 소득은 그렇지 못한 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임금 소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병수당, 한시적 부모수당, 실업급여, 주거수당, 기타 보조금 등도 받는다. 부모들의 평가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장애 아동 외의 다른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아동들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스스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집을 떠나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인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도 개선되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상당수의 사람들이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을 잃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비용 증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삶의 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The Social insurance agency, SIA (2016b). Assistansersättningen. Kort analys 2016:3 [Assistance allowance. Brief analysis 2016: 3]
- The Social insurance agency, SIA (2016b). Hur kan Försäkringskassan bli bättre på att motverka fusk och oegentligheter med assistansersättning? Lärdomar med utgångspunkt från en myndighetsövergripande satsning p
- Dunér, A., & Olin, E. (2018). Personal assistance from family members as an unwanted situation, an optimal solution or an additional good? The Swedish example, *Disability & Society*, 33:1, 1–19, DOI: 10.1080/09687599.2017.1375900
- Ministry of social affairs. (2015). Regleringsbrev för budgetåret 2016 avseende Försäkringskassan. [Regulation letter for the financial year 2016 regarding the Social Insurance Agency]
- SOU. (2008). Möjlighet att leva som andra. Slutbetänkande av LSS-kommittén [Opportunities to live like others. Final report of the LSS Committee].
- SOU. (2012). Åtgärder mot fusk och felaktigheter med assistansersättning. Betänkande av Utredningen om assistansersättningens kostnader [Measures against cheating and inaccuracies with assistance allowance. Report of the Investigation on the costs of assistance allowance]
- SOU. (2014). Förändrad assistansersättning – en översyn av ersättningsystemet. Betänkande av Assistansersättningsutredningen. [Changed assistance allowance – A review of the remuneration system. Report of the assistance allowance investigation]
-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8). Personlig assistans enligt LASS ur ett samhällsekonomiskt perspektiv. [Personal assistance according to LASS from a socio-economic perspective]
- The Swedish Social Insurance Inspectorate, ISF. (2012). Tvåårsomprövningar av assistansersättning. Rapport 2012:13 [Two-year tests of assistance allowance. Report 2012:13]
- The Swedish Social Insurance Inspectorate, ISF. (2014). Assistansersättning och kommunala stöd till personer med funktionsnedsättning, Rapport 2014:9 [Assistant allowances and municipal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eport 2014: 9]
- The Swedish Social Insurance Inspectorate, ISF. (2015). Assistansersättningen. Brister i lagstiftning och tillämpning, Rapport 2015:9 [Assistance allowance. Lack of legislation and application, Report 2015:9]
- The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SALAR. (2015). Koll på assistansen. En handledning för kommunens analys. [Check out the assistance. A tutorial for the municipality's analysis].
- The Swedish Agency for Participation. (2016) Utvärdering och analys av funktionshinderspolitiken 2011–2016 [Evaluation and analysis of disability policies 2011–2016]
- The Swedish Government. (1993). The Act (1993: 387)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s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disabilities, the LSS (Swedish acronym).
- The Swedish Government. (2016). Proposition 2016/17:188 Nationellt mål och inriktning för funktionshinderpolitiken. [National target and focus on disability policy].
- The Social insurance agency, SIA. (2015). Assistansersättningens utveckling – orsaker till ökningen av antalet assistansmottagare och genomsnittligt antal timmar. Socialförsäkringsrapport 2015:13 [Development of the assistance allowance – Causes of increase in assistance beneficiaries and average number of hours. Social Insurance Report 2015:13].
- The Social insurance agency, SIA. (2016a). Assistansersättningens utveckling. Förändringsprocesser 2005–2016. Socialförsäkringsrapport 2016:5 [The development of the assistance allowance. Change processes 2005–2016. Social Insurance Report 2016: 5]
- å att upptäcka och bryta upp assistansbedrägerier, Operation Fjord. Socialförsäkringsrapport. (2016). [How can the SIA be better at combating cheating and irregularities with assistance allowances? Lessons based on a government-wide effort to detect and break up assistance fraud, Operation Fjord. Social Insurance Report 2016, p. 8.]
- The Social insurance agency, SIA. (2017). Assistansersättningens utveckling Socialförsäkringsrapport 2017:4 [The development of the assistance allowance. Social Insurance Report 2017:4]
- The Social insurance agency, SIA. (2018). Assistansersättningen. Kort analys 2018, p. 2 [Assistance allowance. Brief analysis 2018, p. 2]
- Westerberg, B. (2016). Personlig assistans. Hotad frihetsreform? [Personal assistance. Threatened freedom reform?]